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명 :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첨
4. 검토의견 : 별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19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박춘용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된 인사권한중 일부권한을 조정하고, 사유재산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 권한 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한중 5급 이하 지방공무원 (일반직)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 등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, 일부권한을 정비함(안 별표 2).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사유재산(하천, 제방, 구거)의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 (안 별표 3).
- 다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일부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 (안 별표 3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 등의 권한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 시유재산의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, 시외·고속버스 정류소 지도·감독,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며,

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○ 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

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만 위임된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권한 등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,

신규 위임사무의 경우 자치구와 사전에 합의가 되었으며,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.